

【 13 】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06. 4.

제 출 자 : 양 주 시 장

1. 개정이유

- 기업유치 투자진흥기금의 재원 확보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할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정하도록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(법률 제7664호, 2005. 08. 04. 제정, 2006. 01. 01. 시행)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
- 「양주시 기금운영 통합심의위원회 조례」 제정(예정)으로 동 조례의 심의하는 기능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기업유치 투자진흥기금으로 일반회계 자금운용 이자수입금의 40퍼센트를 전입받아 동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(안 제13조)
- 나.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0년으로 명시하며 (안 제15조제3항)
- 다. 「양주시 기금운영 통합심의위원회 조례」 제정(예정)으로 기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하여는 동 조례의 적용으로 삭제하고 심의 기능을 신설함. (안 제16조)

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· 결산”을 삭제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일반회계”를 “일반회계 이자운용 수입금의 40퍼센트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기금의 존속기한은 2010년으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 라 한다.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심의위원회는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· 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제13조(기금의 재원) ① (생략) 1. ~ 3. (생략)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전출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5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< 신 설 ></p> <p>제16조(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) ① <u>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기금의 재원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<u>일반회계</u> <u>이자운용수입금의 40퍼센트를</u> ----- -----</p> <p>제15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기금의 존속기한은 2010년으로 한다.</u></p> <p>제1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<u>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둘다.</u></p> <p>② <u>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</u></p> <p>1. <u>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</u></p> <p>2. <u>기금운용의 성과분석</u></p> <p>3. <u>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</u> <u>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u></p> <p>③ <u>심의위원회는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 위원회가 대행한다.</u></p>